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인천항권역 개발에서 인천광역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고 인천항권역에서 종사하는 기업의 시세 감면 종료에 따른 임대료 증가 예방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는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항만 재배치, 준설토투기장의 조성·개발 등 시민생활이나 기업 환경과 관련된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에 참여하여 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협의하여야 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인천항권역에 관련된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jaemo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발전 조례안 1부.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참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항만 재배치, 준설토투기장의 조성·개발 등 시민생활이나 기업환경과 관련된 공사의 사업에 참여하여 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용역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인천항권역에 관련된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5(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항만공사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